

##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

제 1조 [ 특약의 적용 ]

제 2조 [ 특약의 체결 및 소멸 ]

제 3조 [ “일반계정 지급방식”에 관한 사항 ]

제 4조 [ 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의 변경 ]

제 5조 [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]

제 6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

##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

### 제 1조 [ 특약의 적용 ]

-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약관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지급방식을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“일반계정 지급방식” 또는 주계약에서 정한 “특별계정 지급방식”으로 선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- ② 제1항의 경우, 계약자는 “일반계정 지급방식”과 “특별계정 지급방식”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 2조 [ 특약의 체결 및 소멸 ]

-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미 체결된 변액보험계약(이하“주계약”이라합니다)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 다만, 주계약의 보험료가 자동대출납입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②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### 제 3조 [ “일반계정 지급방식”에 관한 사항 ]

- ① 계약자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,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일반계정에서 대출신청일에 지급합니다. 회사가 해당 보험계약대출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,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③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.
- ④ 회사는 주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.
-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4조 [ 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의 변경 ]

- ① 계약자가 선택한 계정의 지급방식(이하, “변경 후 지급방식”이라 합니다) 외에 다른 계정의 지급방식(이하, “변경 전 지급방식”이라 합니다)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, 계약자는 변경 후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변경 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을 변경 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**제 5조 [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]**

이 특약을 적용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**제 6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**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